

서울특별시서초구화훼산업육성기금설치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 안 번 호	143
------------	-----

제안년월일 : '98. 4. 14
제 안 자 : 도시건설위원회
위 원 장

1. 수정제안이유

화훼산업육성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하여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으로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고, 기금의 운용·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항을 보완하는 등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정함.

2. 수정주요골자

- 화훼산업에 국한한 것을 화훼 및 농업으로 확대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 명, 목적, 설치, 운영 등 관련 규정을 수정함.
- 기금의 운용·관리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구 금고에 대한 관리 위탁, 대여 금리 및 위탁금융기관의 책임 규정을 추가함.
(안 제5조 제3항, 제4항 신설)
- 대출금리 및 상환방법을 명시함. (안제8조 제3항, 제4항)

3. 수정안 : 따로붙임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서초구화훼및농업육성기금설치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의 화훼 및 농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서울특별시서초구화훼및농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화훼 및 농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화훼 및 농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 화훼농가 및 전업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영농자금융자
2. 화훼 및 농산물 재배 시설투자자금 융자
3. 화훼 및 농산물 유통판로확장 사업자금 융자
4. 기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융자·지원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용·관리하며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관리한다.

③ 구금고에 예탁된 기금중에서 제4조 및 제7조제3항제3호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융자대상자와 융자금액이 확정되면 등 금액을 기금을 관리하는 구금고에 대여하고 구금고는 기금의 융자를 필요로 하는 제8조제1항에 규정한 자에게 융자하여 주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 제3항에 의하여 구금고에 대여하는 금리는 제8조제1항에 규정한 기금을 융자 받는 자가 부담하는 제8조 제3항의 대출금리보다 1% 낮게 하고 위탁받은 금융기관

은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기금의 회계기관)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관리위원회) ① 기금운용계획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각국장과 지역농협, 농촌지도소의 직원 및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인사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등
4. 기타 화훼 및 농업육성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의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며 간사에는 담당과장이 서기에는 담당계장이 된다.

제8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주소 및 사업장이 서초구에 소재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융자지원할 수 있다.

1. 농지법 제2조제2호·제3호에서 정한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법인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업종이 국내생산품 화훼 및 농산물유통 판매에 종사하는자
3. 기타 화훼 및 농업과 관련하여 지역농협 및 농촌지도소에서 추천을 받은자 중 위원회에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자.

② 융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한도내에서 한다.

1. 화훼 및 전업농가 : 3천만원 이내
2. 화훼 및 농업법인 : 1억원 이내
3. 화훼 및 농산물판매자 : 2천만원 이내

③ 대출금리는 연 5% 이내로 하되, 대출금리 및 연체금리는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④ 대출금의 상환기간은 3년기자 3년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회계연도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각각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이하 "의회"라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의 내용) ① 제9조1항 규정의 기금운용계획은 운용총칙,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되며, 기금조성계획,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②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사업목표, 자금의 조달과 운용 및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 규정을 둔다.

③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사업별로 주요항목,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④ 자금운용계획중 수입, 지출계획은 세입, 세출예산과 같이 장, 관, 항, 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구청장은 지출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항목 또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한 때에는 제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기금결산 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13조(조사) 구청장은 기금을 용자받은 사업에 대하여 용자기금이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를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출안	수정안
조례명 : 서울특별시서초구 <u>화훼산업육성기금설치조례</u>	조례명 : 서울특별시서초구 <u>화훼및농업육성기금설치조례</u>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u>화훼산업을</u> ----- 서울특별시서초구 <u>화훼산업육성기금</u> (이하“기금”이라한다)-----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u>화훼 및 농업을</u> ----- 서울특별시서초구 <u>화훼및농업육성기금</u> (이하“기금”이라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u>화훼산업의 육성발전에</u> -----	제2조(기금의 설치) <u>화훼 및 농업의 육성발전에</u> -----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u>화훼산업의</u> ----- 1. <u>화훼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영농자금용자</u> 2. <u>화훼재배 시설투자자금 용자</u> 3. <u>화훼유통판로확장 사업자금 용자</u> 4. (생략)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u>화훼 및 농업의</u> 1. <u>화훼농가 및 전업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영농자금용자</u> 2. <u>화훼 및 농산물재배 시설투자자금 용자</u> 3. <u>화훼 및 농산물 유통판로확장 사업자금 용자</u> 4. (제출안과 같음)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서초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이 운용·관리하며 <u>화훼산업육성기금 계좌</u> 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신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 <u>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계좌</u> 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관리한다 ③ 구 금고에 예탁된 기금중에서 제4조 및 제7조 제3항제3호와 세8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은자대상자와 은자금액이 확정되면 동 금액을 기금을 관리하는 구 금고에 대여하고 구 금고는 기금의 은자를 필요로 하는 제8조제1항에 규정한 자에게 은자하여 주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 제3항에 의하여 구금고에 대여하는 금리는 제8조제1항에 규정한 기금을 은자받는 자가 부담하는 제8조 제3항의 대출금리보다 1% 낮게 하고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출안	수정안
<p>제7조(기금관리위원회)----- -----화훼산업육성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각국장과 지역농협, 농촌지도소의 직원 및 전문가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인사로 한다.</p> <p>③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기타 <u>화훼산업육성에 관하여</u>. 	<p>제7조(기금관리위원회)----- -----화훼및농업육성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p> <p>② -----직원 및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인사로 한다.</p> <p>③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출안과 같음) 2. (제출안과 같음) 3. (제출안과 같음) 4. 기타 <u>화훼 및 농업육성에 관하여</u>.
<p>제8조(기금의 사용 등) ①기금은----- -----용자지원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한 「농업인」 「농업법인」 으로 <u>화훼산업에</u> 종사하는자 또는 법인 2. -----업종이 국내생산품 <u>화훼유통판매에</u> 종사하는자 3. 기타 <u>화훼산업과</u> 관련하여-----. <p>② 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한도내에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화훼생산 농가</u> : 3천만원 이내 2. <u>화훼생산 및 농업법인</u> : 1억원 이내 3. <u>화훼유통판매자</u> : 2천만원 이내 <p>③ 용자 및 지원방법, 상환절차, 대출금리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신설)</p>	<p>제8조(기금의 사용 등) ①기금은----- -----용자지원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한 「농업인」 「농업법인」 으로 농업에 종사하는자 또는 법인 2. -----업종이 국내생산품 <u>화훼 및 농산물유통판매에</u> 종사하는자 3. 기타 <u>화훼 및 농업과</u> 관련하여-----. <p>② 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한도내에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화훼 및 전업농가</u> : 3천만원 이내 2. <u>화훼 및 농업법인</u> : 1억원 이내 3. <u>화훼 및 농산물판매자</u> : 2천만원 이내 <p>③ 대출금리는 연 5% 이내로 하되, 대출금리 및 연체금리는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p> <p>④ 대출금의 상환기간은 3년까지 3년 단위로 분할 상환으로 한다.</p>